

표준번호	HFBC-S-212	교회회원 규칙 (Standard for Church Membership)	개정번호	1
페이지	1 / 4		제개정일	2012.2.12

- 목 차 -

1. 서문
2. 목적
3. 적용범위
4. 회원의 자격 및 결정
5. 회원의 권리
6. 회원의 의무
7. 회원권의 정지와 복권
8. 징계

구분	입안	검토	심의 / 승인
책임	교회행정팀	지역자회의	사무처리회
일자	2008년 5월 14일	2012년 2월 8일	2012년 2월 12일

표준번호	HFBC-S-212	교회회원 규칙 (Standard for Church Membership)	개정번호	1
페이지	2/4		제개정일	2012.2.12

1. 서문

본 규칙은 교회의 회원을 규정한 표준으로서 표지의 사무처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적용된다.

2. 목적

성도가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로서의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다하게 하기 위함이다.

3. 적용범위

우리교회에 등록된 성도의 회원권 부여에 대한 심사부터 회원권의 정지, 징계 및 박탈까지의 회원권에 대한 모든 활동이다.

4. 회원의 자격 및 결정

(1) 다음의 신앙고백과 헌신이 있는 경우 우리 교회의 회원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 ① 죄인임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신자
- ② 침례를 받은 신자 (단,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는 세례로 이 항목을 대신한다. 그러나 영세와 유아세례를 받은 자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 ③ 교회 등록일로부터 1년간 성실히 주일성수 한 신자
- ④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신자
- ⑤ 한 가지 이상의 교회의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기로 작정한 신자
- ⑥ 회중 앞에서 교회회원서약을 한 신자
- ⑦ 만 19 세 이상 인자 (우리 교회는 교회회원에 서약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9 세로 본다)

(2) 다른 교회에서 전입된 자도 위 (1)항을 만족한 자이어야 한다.

(3) 위 (1)항이 만족된 신자는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는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

표준번호	HFBC-S-212	교회회원 규칙 (Standard for Church Membership)	개정번호	1
페이지	3 / 4		제개정일	2012.2.12

(4) 우리 교회의 교역자로 추천된 자가 회중의 결정으로 교역자가 되었을 때는 동시에 회원권이 주어진다.

5. 회원의 권리

- (1) 모든 회원은 교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일반적인 권리들을 소유하며, 사무처리회를 통하여 질의, 토의 및 제안할 권리가 있다.
- (2) 모든 회원은 사무처리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교회 주요 직무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주인의식을 지닌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기본적인 의무를 기꺼이 감당한다.

- (1) 회원권이 주어진 후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 한다.
- (2) 사무처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모든 교회의 안건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토론하고 의사를 개진하며 성숙한 결의를 표현한다.
- (3)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책임을 깨닫고 자신의 은사와 재능과 사명감에 알맞은 일을 찾아 봉사한다.
- (4) 교회의 재정적인 책임을 분담한다 (십일조 등).
- (5) 교회의 프로그램과 행사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사람의 동참을 독려한다.

7. 회원권의 정지와 복권

7.1. 회원권의 정지

우리 교회 회원권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권이 정지된다.

- (1) 유학, 직장연수, 파견근무 등, 외지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2) 4항(회원의 자격 및 결정) 중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확인 된 경우

표준번호	HFBC-S-212	교회회원 규칙 (Standard for Church Membership)	개정번호	1
페이지	4 / 4		제개정일	2012.2.12

7.2. 회원권의 상실

우리 교회 회원권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권이 상실된다.

- (1) 사망한 경우
- (2) 다른 교회로 이동하여 이명증서를 발송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4) 8항(징계)의 규정에 의해 회원자격이 박탈된 경우

7.3. 회원권의 복권

회원권이 정지 및 상실되었던 사람은 다음과 같이 복권될 수 있다.

- (1) 유학, 직장연수, 파견근무가 끝나 돌아오면 즉시 복권된다.
- (2) 7.1항(회원권의 정지)의 (2)항과 7.2항(회원권의 상실)의 (3)항과 (4)항의 사유로 회원권이 정지 및 상실된 사람이 다시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의 회개와 징계사유가 없어진 증거를 운영위원회와 담임 목회자가 확인하고 평가한 후 임시 사무처리회의 승인을 득하여 복권될 수 있다.

8. 징계

- (1) 우리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문제를 초래한 회원을 돕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
- (2) 회원이 비윤리적이거나 비기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거나 회원으로서 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그 회원은 징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징계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책임사항이다.
- (3) 운영위원회는 대상이 되는 회원의 징계 전에 일정 기간의 통고 (필요 시 청문)와 회개를 위한 사랑의 권면을 하여야 한다.

(교회회원규칙 끝)